

# 제17기 제2회 상해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1. 개최일시: 2021. 7. 07(수), 14:00
2. 참석인원(정수/결원/불참/참석): 12명/0명/1명/11명
3. 안건 및 심의내용 (안건 총 7건, 수정가결 1건, 원안가결 6건)

번호	심 의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1	2021학년도 중등 공동교육 과정 과목 개설 운영안	원안 가결	<p>▶소관: 중등 교무기획부 ▶주요내용 가. 대상 학년 : 11학년 나. 운영 계획 1) 공동교육과정으로 지정된 세 과목을 우리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공동 교육과정 운영계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운영학교</th> <th colspan="2" style="width: 55%;">소주한국학교</th> <th style="width: 30%;">상해한국학교</th> </tr> </thead> <tbody> <tr> <td>개설교과</td> <td>AP PHYSICS</td> <td>AP MACRO ECONOMICS</td> <td>AP CALCULUS</td> </tr> <tr> <td>교과편제</td> <td>+1체제 (과목추가)</td> <td>+1체제 (과목추가)</td> <td>+1체제 (과목추가)</td> </tr> <tr> <td>운영단위</td> <td>4단위</td> <td>4단위</td> <td>4단위</td> </tr> <tr> <td>운영기간</td> <td>2021.08. ~2022.01</td> <td>2021.08. ~2022.01</td> <td>2021.08. ~2022.01</td> </tr> <tr> <td>수업장소</td> <td>원격수업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td> <td>원격수업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td> <td>원격수업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td> </tr> <tr> <td>수업방법</td> <td>ZOOM을 이용한 온라인수업</td> <td>ZOOM을 이용한 온라인수업</td> <td>ZOOM을 이용한 온라인수업</td> </tr> <tr> <td>수업요일</td> <td>화, 목</td> <td>화, 목</td> <td>화, 목</td> </tr> <tr> <td>담당교사</td> <td>김정경</td> <td>임희영</td> <td>진영현</td> </tr> <tr> <td>인원</td> <td>25명 내외</td> <td>25명 내외</td> <td>25명 내외</td> </tr> </tbody> </table> <p>※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발 기준에 따라서 적정 인원을 선발함. - AP 교육과정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육부에서 지원예정 - 정규교육과정 외 추가 4단위 이수(NEIS에 이수여부 기록)</p>	구분\운영학교	소주한국학교		상해한국학교	개설교과	AP PHYSICS	AP MACRO ECONOMICS	AP CALCULUS	교과편제	+1체제 (과목추가)	+1체제 (과목추가)	+1체제 (과목추가)	운영단위	4단위	4단위	4단위	운영기간	2021.08. ~2022.01	2021.08. ~2022.01	2021.08. ~2022.01	수업장소	원격수업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	원격수업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	원격수업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	수업방법	ZOOM을 이용한 온라인수업	ZOOM을 이용한 온라인수업	ZOOM을 이용한 온라인수업	수업요일	화, 목	화, 목	화, 목	담당교사	김정경	임희영	진영현	인원	25명 내외	25명 내외	25명 내외
구분\운영학교	소주한국학교		상해한국학교																																								
개설교과	AP PHYSICS	AP MACRO ECONOMICS	AP CALCULUS																																								
교과편제	+1체제 (과목추가)	+1체제 (과목추가)	+1체제 (과목추가)																																								
운영단위	4단위	4단위	4단위																																								
운영기간	2021.08. ~2022.01	2021.08. ~2022.01	2021.08. ~2022.01																																								
수업장소	원격수업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	원격수업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	원격수업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																																								
수업방법	ZOOM을 이용한 온라인수업	ZOOM을 이용한 온라인수업	ZOOM을 이용한 온라인수업																																								
수업요일	화, 목	화, 목	화, 목																																								
담당교사	김정경	임희영	진영현																																								
인원	25명 내외	25명 내외	25명 내외																																								
2	2021학년도 학비조정안	수정 가결	<p>▶소관: 행정실 ▶주요내용 가. 수업료 인상안 재학생 기준 2학기에 연간인상액 3,600위안 적용 나. 입학금 인상안(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초등 현행 15,000위안에서 20,000위안으로 인상 중등 현행 15,000위안에서 25,000위안으로 인상 다. 수업료 감면적용 변경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둘째 자녀</th> <th rowspan="2">셋째 자녀</th> <th rowspan="2">넷째자녀이상</th> <th colspan="2">적용기준</th> </tr> <tr> <th>전·편입생</th> <th>재학생</th> </tr> </thead> <tbody> <tr> <td>현행</td> <td>10% 감면</td> <td>25% 감면</td> <td>100% 면제</td> <td></td> <td></td> </tr> <tr> <td>제안</td> <td>감면 없음</td> <td colspan="2">감면없음 (교육부 학비지원금으로 대체 반영)</td> <td colspan="2">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2021학년도부터 유예기간 적용</td> </tr> <tr> <td>변경</td> <td>감면 없음</td> <td colspan="2">기존과 동일하게 적용</td> <td colspan="2">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2021학년도부터 유예기간 적용</td> </tr> </tbody> </table> <p>라. 수업료 반환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구분</th> <th>현행</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납부</td> <td>전입학이 속한 달부터 월할계산</td> <td>전입학이 해당하는 날부터 일할계산</td> </tr> <tr> <td>반환</td> <td>해당하는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월할계산, 학기 종료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td> <td>해당하는 날이 속한 날의 익일부터 일할계산, 수업일수가 매학기는 1/2 초과시 반환하지 않음</td> </tr> </tbody> </table> <p>※ 시행일: 법인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날부터</p>	구분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자녀이상	적용기준		전·편입생	재학생	현행	10% 감면	25% 감면	100% 면제			제안	감면 없음	감면없음 (교육부 학비지원금으로 대체 반영)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2021학년도부터 유예기간 적용		변경	감면 없음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2021학년도부터 유예기간 적용		구분	현행	변경	납부	전입학이 속한 달부터 월할계산	전입학이 해당하는 날부터 일할계산	반환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월할계산, 학기 종료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해당하는 날이 속한 날의 익일부터 일할계산, 수업일수가 매학기는 1/2 초과시 반환하지 않음					
구분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자녀이상					적용기준																																			
				전·편입생	재학생																																						
현행	10% 감면	25% 감면	100% 면제																																								
제안	감면 없음	감면없음 (교육부 학비지원금으로 대체 반영)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2021학년도부터 유예기간 적용																																							
변경	감면 없음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2021학년도부터 유예기간 적용																																							
구분	현행	변경																																									
납부	전입학이 속한 달부터 월할계산	전입학이 해당하는 날부터 일할계산																																									
반환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월할계산, 학기 종료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해당하는 날이 속한 날의 익일부터 일할계산, 수업일수가 매학기는 1/2 초과시 반환하지 않음																																									

구분	심의안건명	심의결과	내용																																																			
3	제증명수수료 징수기준 변경안	원안 가결	<p>▶ 소관: 행정실 ▶ 주요내용 가. 제증명수수료 변경안</p> <table border="1" data-bbox="742 291 1420 459"> <thead> <tr> <th colspan="2">재학생</th> <th rowspan="2">졸업생</th> <th rowspan="2">교직원</th> </tr> <tr> <th>발급시점 재학서류</th> <th>발급시점 졸업서류</th> </tr> </thead> <tbody> <tr> <td>무료</td> <td>1통당 10위안</td> <td>1통당 10위안</td> <td>1통당 10위안 (증명서당 최초 1통 무료 발급)</td> </tr> </tbody> </table> <p>나. 제증명수수료 징수 규정 개정 신·구 대조문</p> <table border="1" data-bbox="742 492 1420 1366"> <thead> <tr> <th colspan="2">현행</th> <th colspan="2">개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제2조(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lt;개정 2018. 6. 15.&gt; </td>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제2조(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lt;개정 2018. 6. 15., 2021.07.00.&gt; </td> </tr> <tr> <td>증명의 종류</td> <td>입학·재학·제적·휴학·복학·수료(예정)·졸업(예정)·학적(학교생활기록부)·교육비납입증명·재직·경력·급여증명서 등</td> <td>증명의 종류</td> <td>입학·재학·제적·휴학·복학·수료(예정)·졸업(예정)·학적(학교생활기록부)·교육비납입증명·재직·경력·급여증명서 등</td> </tr> <tr> <td rowspan="3">수수료</td> <td>국·공·민·사립 대학</td> <td rowspan="3">재학생</td> <td rowspan="3">발급시점 졸업서류</td> </tr> <tr> <td>수료</td> <td>발급시점 재학서류</td> </tr> <tr> <td>12학년 대학 서류</td> <td>1통당 10위안</td> </tr> <tr> <td>비고</td> <td>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의 경우 국문증명서 발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td> <td>※ 발급시점 재학생류란 재학중인 학교급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미함 (예: 중학교 재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관련서류 발급시 수수료가 발생함)</td> <td>교직원</td> <td>1통당 10위안 (증명서당 최초 1통 무료 발급)</td> </tr> <tr>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제4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삭제 &lt;2018. 6. 15.&gt; 3. 생략 </td>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제4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삭제 &lt;2018. 6. 15.&gt; 3. 생략 4. 재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급에 해당하는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lt;신설 2021. 7. 00.&gt; </td> </tr> <tr>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제5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td>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제5조(증명서의 발급 제한) ① 학비 및 기타수익자부담금이 미납인 경우 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lt;신설 2021. 7. 00.&gt;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는 당해연도 수업료가 완납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lt;신설 2021. 7. 00.&gt; </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제6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변경 2021.07.00.] </td> </tr> <tr>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부칙 &lt;2018. 6. 15.&gt; 이 규정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td>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부칙 &lt;2021. 7. 00.&gt; 이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td> </tr> </tbody> </table>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발급시점 재학서류	발급시점 졸업서류	무료	1통당 10위안	1통당 10위안	1통당 10위안 (증명서당 최초 1통 무료 발급)	현행		개정		<input type="checkbox"/> 제2조(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6. 15.>		<input type="checkbox"/> 제2조(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6. 15., 2021.07.00.>		증명의 종류	입학·재학·제적·휴학·복학·수료(예정)·졸업(예정)·학적(학교생활기록부)·교육비납입증명·재직·경력·급여증명서 등	증명의 종류	입학·재학·제적·휴학·복학·수료(예정)·졸업(예정)·학적(학교생활기록부)·교육비납입증명·재직·경력·급여증명서 등	수수료	국·공·민·사립 대학	재학생	발급시점 졸업서류	수료	발급시점 재학서류	12학년 대학 서류	1통당 10위안	비고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의 경우 국문증명서 발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발급시점 재학생류란 재학중인 학교급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미함 (예: 중학교 재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관련서류 발급시 수수료가 발생함)	교직원	1통당 10위안 (증명서당 최초 1통 무료 발급)	<input type="checkbox"/> 제4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삭제 <2018. 6. 15.> 3. 생략		<input type="checkbox"/> 제4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삭제 <2018. 6. 15.> 3. 생략 4. 재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급에 해당하는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 7. 00.>		<input type="checkbox"/> 제5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input type="checkbox"/> 제5조(증명서의 발급 제한) ① 학비 및 기타수익자부담금이 미납인 경우 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2021. 7. 00.>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는 당해연도 수업료가 완납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신설 2021. 7. 00.>				<input type="checkbox"/> 제6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변경 2021.07.00.]		<input type="checkbox"/> 부칙 <2018. 6. 15.> 이 규정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input type="checkbox"/> 부칙 <2021. 7. 00.> 이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발급시점 재학서류	발급시점 졸업서류																																																					
무료	1통당 10위안	1통당 10위안	1통당 10위안 (증명서당 최초 1통 무료 발급)																																																			
현행		개정																																																				
<input type="checkbox"/> 제2조(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6. 15.>		<input type="checkbox"/> 제2조(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6. 15., 2021.07.00.>																																																				
증명의 종류	입학·재학·제적·휴학·복학·수료(예정)·졸업(예정)·학적(학교생활기록부)·교육비납입증명·재직·경력·급여증명서 등	증명의 종류	입학·재학·제적·휴학·복학·수료(예정)·졸업(예정)·학적(학교생활기록부)·교육비납입증명·재직·경력·급여증명서 등																																																			
수수료	국·공·민·사립 대학	재학생	발급시점 졸업서류																																																			
	수료			발급시점 재학서류																																																		
	12학년 대학 서류			1통당 10위안																																																		
비고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의 경우 국문증명서 발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발급시점 재학생류란 재학중인 학교급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미함 (예: 중학교 재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관련서류 발급시 수수료가 발생함)	교직원	1통당 10위안 (증명서당 최초 1통 무료 발급)																																																		
<input type="checkbox"/> 제4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삭제 <2018. 6. 15.> 3. 생략		<input type="checkbox"/> 제4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삭제 <2018. 6. 15.> 3. 생략 4. 재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급에 해당하는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 7. 00.>																																																				
<input type="checkbox"/> 제5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input type="checkbox"/> 제5조(증명서의 발급 제한) ① 학비 및 기타수익자부담금이 미납인 경우 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2021. 7. 00.>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는 당해연도 수업료가 완납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신설 2021. 7. 00.>																																																				
		<input type="checkbox"/> 제6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변경 2021.07.00.]																																																				
<input type="checkbox"/> 부칙 <2018. 6. 15.> 이 규정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input type="checkbox"/> 부칙 <2021. 7. 00.> 이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번 호	심 의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4	2021학년도 글로벌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계획(안)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중등 창의체험부</li> <li>▶주요내용 교육부 재외한국학교 교수학습자료 지원사업을 통한 연구내용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 접할 수 없는 주제와 수업내용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li> <li>▶일정: 7월 17일부터 11월 6일 매주 정해진 수, 토요일</li> <li>▶수강료 및 비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수강학생수</td> <td>5명</td><td>6명</td><td>7명</td><td>8명</td><td>9명</td><td>10명</td><td>11명</td><td>12명</td><td>13명</td><td>14명</td><td>15명</td> </tr> <tr> <td>학생(명)</td> <td>5</td><td>6</td><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 </tr> <tr> <td>수강료(₩)</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1차시</td> <td>273</td><td>290</td><td>307</td><td>324</td><td>341</td><td>358</td><td>375</td><td>392</td><td>409</td><td>426</td><td>443</td> </tr> <tr> <td>강사료</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사 수당은 본교의 방과후학교 강사수당을 따름.</li> <li>※학생수강료는 수강인원이 15명을 초과할 경우, 교사강사료(수강인원이 15명인 경우)에 맞춰 수강료를 재책정한다.</li> <li>- 강사 수당은 매월 초 전월 수업 시간을 계산하여 강사수당을 기안함.</li> <li>- 수강료는 첫수업시작 전까지 징수, 징수가 완료된 다음 강사료를 기안할 수 있음</li> <li>- 교통비, 점심도시락 및 준비물은 교수학습개발비 예산 사용</li> </ul>	수강학생수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생(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수강료(₩)												1차시	273	290	307	324	341	358	375	392	409	426	443	강사료											
수강학생수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생(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수강료(₩)																																																															
1차시	273	290	307	324	341	358	375	392	409	426	443																																																				
강사료																																																															
5	2021학년도 2학기 초등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안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초등 방과후부</li> <li>▶주요내용 가.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 나.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운영되며, 전학 및 입원 등 개인사유로의 수강포기 및 수강료 환불은 불가</li> <li>▶운영기간: 9월3일(금) ~ 12월7일(화) 화,목,금 각 10주(20차시) - 수강료 산출기초: (강사수당/수강인원)+수용비5% - 수용비는 강사료의 5% - 강사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수업시간은 14:50~16:10(80분) - 2학기 42개 강좌 개설예정(변동가능)</li> </ul>																																																												
6	2021학년도 중등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중등 학년기획부</li> <li>▶주요내용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거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 및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운영하고자 함</li> <li>▶방과후학교 - 기간: 1기(7월19일-7월30일,2주),2기(8월2일-8월13일,2주) - 개설강좌: 1기 15개, 2기 12개, 온라인강좌 4개 강좌 - 수업시간: 오프라인 8:40-12:00 온라인은 교사와 학생이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운영</li> <li>▶자기주도학습 운영 - 기간: 7월19일(월)-8월13일(금) 총 20일 - 운영시간: 08:40 - 16:05 - 참가비 무료, 감독교사 없으며 당직교사가 순회지도 - 등교는 방과후차량 이용, 하교는 교직원차량 이용</li> </ul>																																																												
7	2021학년도 초등 여름 캠프 운영 계획안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초등 창의체험부</li> <li>▶주요내용 여름방학 중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초등 여름캠프를 운영하고자 함</li> <li>▶프로그램 운영(총 7개 프로그램) - 일시: 7월19일(월)-30일(금),2주간/합창부 별도운영 - 수강료: 방과후 수강료(20차시에 준함)+차량비 별도 - 수업시간: 8:30-12:00(매일 4차시) - 만족도 조사는 서면으로 실시 후 결과보고</li> </ul>																																																												

☞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